「청탁금지법」 주요내용 안내

법률 적용 대상

- ▶ 기 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학교, 언론사 등
- ▶ 대상자 : 공직자등, 공직자등의 배우자, <mark>공무수행사인</mark>, 부정청탁 제공자 등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
 - 공공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민간인
 - 심의·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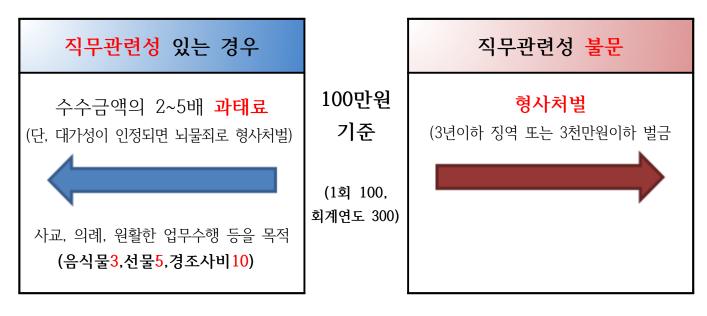
주요내용 : 공무수행사인은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 제한(법 제11조)

Ⅰ. 부정청탁금지

- ▶ 인허가, 인사, 계약 등 14개 부패빈발 유형 금지
- 1. 인·허가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제1호)
- 2.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 감경·면제 관련 부정청탁(제2호)
- 3. 인사 개입 등 관련 부정청탁(제3호)
- 4.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 직위 선정·탈락 관련 부정청탁(제4호)
- 5.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관련 부정청탁(제5호)
- 6. 입찰·경매 등 직무상 비밀 누설 관련 부정청탁(제6호)
- 7.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부정청탁(제7호)
- 8. 보조금·장려금 등 배정·지원 개입 등 관련 부정청탁(제8호)
- 9. 공공기관의 재화·용역 매각·교환 등 관련 부정청탁(제9호)
- 10. 학교의 입학·성적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제10호)
- 11. 징병검사·부대배속 등 병역 관련 부정청탁(제11호)
- 12. 각종 평가·판정 결과 조작 등 관련 부정청탁(제12호)
- 13. 행정지도·단속·감사 결과 조작·묵인 관련 부정청탁(제13호)
- 14. 수사·재판·심판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제14호)
- 대응방법 : 1. 청탁 받을시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
 - 2. 동일한 부정청탁을 재차 받을 시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
- 징계 및 벌칙 : 위반 유형에 따라 1~3천만원 과태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Ⅱ. 금품 수수등의 금지

- 대응방법 : 금품등 수수 시 **지체없이**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 후 반환 (제공자를 모를 경우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 후 감사담당관으로 인도)



※ 공무수행사인은 제10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부분은 해당사항 없음

Q&A 청탁금지법 Q&A 목차

순서	제목	비고
Q1	공직자등의 배우자도 법 적용대상인지?	
Q2	모든 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요?	
Q3	법인 단체의 경우 공무수행사인으로 법적용대상에 포함되는 범위?	
Q4	공무수행사인도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이 적용?	
Q5	공무수행사인이 공무 수행과 관련 없이 받아도 처벌되나요?	
Q6	14가지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 외의 청탁은 해도 되나요?	
Q7	부정청탁을 하였으나 그에 따라 수행하지 않은 경우?	
Q8	이해당사자는 자신의 일에 관하여 직접 부정청탁을 해도 되나요?	
Q9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Q10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나요?	
Q11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고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Q12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면 언제나 처벌되나요?	
Q13	식사비 5만원을 3만원은 제공자가 결제, 2만원은 공직자등이 결제?	
Q14	식사접대와 선물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Q15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면 배우자가 처벌받는지?	

Q1. 공직자등의 배우자도 법 적용대상인지?

- ☞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되고, 이 경우 공직자등이 이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공직자등이 처벌받게 됨. 여기에서 배우자는 법률에서 명시적 규정으로 사실혼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한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함
- Q2.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의 경우 공무수행사인으로 법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 ☞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임·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구성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Q3. 모든 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요?

-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고,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아닌 경우 그 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음. 여기서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뿐만 아니라 조례·규칙을 포함하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제정된 고시, 훈령도 포함됨
- Q4. 궁무수행사인의 경우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나요?
- ☞ 공무수행사인에 대해서는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관련 규정만 적용되고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 Q5. 궁무수행사인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궁무 수행과 관련없이 받아도 처벌되나요?
- ☞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서만 제8조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이 적용되므로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경우도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경우에만 금지됨

- Q6. 법에 열거된 14가지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 외의 청탁은 해도 되나요?
- ☞ 청탁금지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부정청탁행위 외에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은 공무원 행동강령 또는 공공 기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행동강령이나 윤리강령에 따라 규율됨
- Q7. 부정청탁을 하였으나 그에 따라 궁직자등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도 제재대상이 되나요?
- ☞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을 한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를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정청탁 내용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청탁을 한 자는 제재대상에 해당함
- Q8. 이해당사자는 자신의 일에 관하여 직접 부정청탁을 해도 되나요?
- ☞ 이해당사자가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니지만 금지되는 행위이므로 부정청탁자가 공직자등인 경우 징계대상은 될수 있고, 이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형사처벌 대상임
- Q9.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법령 을 위반하여 직무를 처리하도록 요구해도 되나요?
- ☞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형식적 요건)에 따르는 이상 그 내용이 부정 청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예외사유에 해당함
- Q10. 직무를 수행하는 궁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나요?
-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부정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함
- Q11. 직무를 수행하는 궁직자등이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고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에 따라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함

Q12.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면 언제나 처벌되나요?

☞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됨. 다만 직무와 관련 없이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이나 법 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8가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수수 금지 금품등에서 제외됨

Q13. 식사를 한 후 1인당 식사비가 5만원이 나온 경우 3만원은 제공자가 결제 하고 2만원은 공직자등이 결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음식물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등이 지불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Q14. 식사접대와 선물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고 이 경우 가액기준은 5만원으로 하되 각각의 가액범위(음식물 3만원이하, 선물 5만원 이하)를 넘지 못함

Q15.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면 배우자가 처벌받는지?

☞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해당 공직자등이 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등은 처벌됨. 즉,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은 아님(다만, 변호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